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승의학원(승의여자대학교)의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승의학원(승의여자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승의학원(승의여자대학교)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1. 승의대학교 결산서의 검토
별첨: 승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별지 제3호서식)
2. 특수관계자 거래등 주식공시
별첨: 승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별지 제3호서식)

2024년 4 월 8 일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 최 정 희(인)

감사 문 홍 희(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3998호)

피감사자 (입회인)

승의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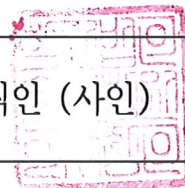
총무처장 김 현 석(인)

학교법인 승의학원

총무차장 홍 삼 기(인)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3회계연도 <u>2023</u> 년 3월 1일부터 <u>2024</u> 년 2월 29일까지	
·지적사항(내용) : 법인회계(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해 당 사 항 없 음.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백정수 직인 (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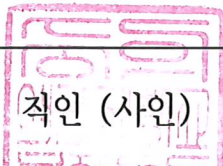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숭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3회계연도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지적사항(내용) : 학교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숭의여자대학교 결산서의 검토</p> <p>숭의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상 예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제3호 예산편성요령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 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p> <p>숭의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계정의 오류 및 보완사항이 있음</p> <p>가. 감가상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고정자산의 재무제표상 인식시점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이경우 자산에 대한 구축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때 감가상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p>나. 단기수강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등록금 회계상 평생교육원 단기수강료 수입은 등록금 회계와 반납기준이 다르므로 설치근거에 따라 반납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인별 관리가 필요할 것을 판단됩니다.	<p>1. 숭의여자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의 검토</p> <p>가. 감가상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을 정액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가상각 인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음.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 인식기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에서는 사용가능한 시점에 감가상각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p>우리 대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감가상각 인식기준을 잔금 지급일로 처리함, 수정 분개하여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비를 수정하여 반영함</p> <p>나. 단기수강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기준」에 근거하여 수강생 인별 관리 가능하도록 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
피감사기관장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박경호  직인 (사인)

[별지 제2호 서식]

승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3회계연도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지적사항(내용) : 학교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2. 특수관계자 거래등 주식공시</p> <p>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교육부고시 제2018-159호, 2018.06.29.)」 별지 제4호 서식 중요한 재무정보에 기술된 사항은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주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p> <p>나. 당기 거래 확인결과 기존 공시하고 있는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외 오비에스라디오, 호명관광, 영안상사(주)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중요성 금액과 관계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p> <p>회계 원장내 거래처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에 따라 향후 해당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작성/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특수관계자 거래등 주식공시</p> <p>가. 중요한 재무정보는 빠짐없이 주석에 기재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금 및 과태료 납부내역- 소송 중인 사항 <p>나. 특수관계자 공시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오비에스라디오- 호명관광- 영안상사(주) <p>기존에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공시하였으나 재무제표별로 공시예정임</p> <p>다. 총계정원장 목록에 거래처가 미표시되어 있음. 전산으로 추가 표시되도록 프로그램 수정 협조 예정임</p>
<p>피감사기관장 승의여자대학교 총장 박경호 직인 (사인)</p>	

